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516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박일지, 한창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 접수 제27430호로 마친 2번 B지분 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단488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4. 6. 23. ‘B은 유한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96,331원 및 그 중 27,853,421원에 대하여 2003. 8. 13.부터 2004. 5. 28.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4. 7.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1.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2019. 7. 3. 피고에게 2019. 7.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05. 5. 9. 협의이혼한 후 2017. 8. 4.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0. 9. 15. 재차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익산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소유로 남아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피고는 B의 배우자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B이 2019. 7. 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B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하여 그 중 1/2 지분에 대해서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B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준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B은 2017. 7. 15.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8,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용자금 102,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 252,000,000원은 2017. 8. 1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B 앞으로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B이 매수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없다.

피고는 2017. 7. 13. 계약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의 남동생인 F이 2017. 7. 15. 나머지 26,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7. 8. 11. G은행 대출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02,125,4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자금출처는 2017. 8. 10. 피고의 친언니 H으로부터 100,000,000원, 2017. 8. 11. LH전북지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642,680원, 피고의 아버지 I으로부터 27,000,000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이다.

피고는 2017. 8. 11. 주식회사 G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9. 9. 30. 대출금을 완제하여 2019. 10. 1.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대출금의 대부분인 120,000,000원은 피고의 G은행 J통장에서 이체되었고, 특히 그 중 2018. 6. 18. 상환금액 80,000,000원은 피고의 G은행 J통장에서 2017. 11. 13. 60,000,000원을, 2018. 5. 10. 20,000,000원을 각 수표로 인출하여 익산우체국의 단기예금에 각 가입한 후 2018. 6. 18. 위 각

단기예금을 해약하여 피고의 G은행 J통장으로 이체한 후 상환한 것이다. 나머지 대출금 상환액인 30,000,000원은 피고의 자녀 K이 2019. 1. 7. L은행의 예금을 해지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상환한 것이다.

③ 피고는 조리종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피고의 자녀 K은 주식회사 M에서 2016. 8. 17.부터 2018. 11. 22.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피로타 86,247㎡

2층 피로타 26,864㎡

3층부터 26층 370,458㎡

27층 210,982㎡

28층 210,9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대 55639.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88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55639.5분의 35.661

